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73명(6급 16명, 8급 5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5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2018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개방형 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 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직위의 보임직급을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으로 전환하며,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0. 21. ~ 10.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각 과장”을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기획과장”으로,
“서기관”을 “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감사관·납세자보호관 및 서울청의 송무국장”을 “감사관
및 납세자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청”을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교수과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서울청”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세무주사 “244”를 “243”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1”을 “2”로 한다.

별표 10 중 세무서기보 “3,479”를 “3,492”로 하고,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
서기보 “22”를 “27”로 하며, 방호서기보 “147”을 “148”로 하고, 열관리운영
서기보 “18”을 “16”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484”를 “467”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세무서기보 “3,479”를 “3,492”로 하고,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
서기보 “22”를 “27”로 하며, 방호서기보 “147”을 “148”로 하고, 열관리운영
서기보 “18”을 “16”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484”를 “467”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68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9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3명”을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① (생략)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① (현행과 같음)
②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 · 교육기획과 및 교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u>교육지원과장 및 교육기획과장</u> ----- <u>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수과장은 서기관</u> ---.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국세청의 <u>감사관 · 납세자보호관 및 서울청의 송무국장을 말한다.</u>	① ----- ----- ----- ----- <u>감사관 및 납세자보호관</u>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의 세정홍보과장 · 학자금상환과장, <u>서울청의 송무3과장, 중부청의 송무과장, 대전청 · 광주지방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부산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 송무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u>	②----- ----- ----- ----- <u>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과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서울청</u> ----- ----- ----- -----.

기획재정부령 제68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세무
주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
주사 1명은 각각 2020년 12월 3
1일까지 존속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
재정부령 제64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
로서 별표6의2의 개정규정에 따
라 감원된 정원 5명(전산사무관
5명)을 제외한 정원 2명(세무주
사 2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7
1명(세무주사 14명, 세무서기 5

기획재정부령 제68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 -----

----- 2022년-----
-----.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7명)은 각각 <u>2020년</u> 12월 15일 까지 존속한다. ② (생 략)	----- <u>2022년</u>----- -----. ②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79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9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u>별표 6의2의 세무 주사 3명</u> 및 세무주사보 1명, 별 표 7의2의 행정사무관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16명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 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 ----- ----- <u>별표 6의2의 세무 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u>----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세무주사			<u>244</u>		<u>243</u>	-1	
		•		•	•		
		•		•	•		
학예연구사			<u>1</u>		<u>2</u>	+1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세무서기보	<u>3,479</u>	<u>3,492</u>	+13
세무서기보 또는	<u>22</u>	<u>27</u>	+5
전산서기보			
·	·	·	
방호서기보	<u>147</u>	<u>148</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18</u>	<u>16</u>	-2
사무운영서기보	<u>484</u>	<u>467</u>	-17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세무서기보	<u>3,479</u>	<u>3,492</u>	+13
세무서기보 또는	<u>22</u>	<u>27</u>	+5
전산서기보			
·	·	·	
방호서기보	<u>147</u>	<u>148</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18</u>	<u>16</u>	-2
사무운영서기보	<u>484</u>	<u>467</u>	-17
·	·	·	
·	·	·	